



소중한 나 행복하게 성장하는 우리  
**가정통신문**

우)55737  
남원시 춘향로 73번지  
(<http://www.nwys.ms.kr>)  
교무실 : (063) 633-4549  
팩 스 : (063) 631-4734

## 올바른 자전거 안전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복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에 자전거 이용 통학 학생의 증가와 함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30.0% 늘었습니다.

구 분	보행자	고령자	어린이	음주운전	화물차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22년	933	1,258	18	171	629	484	91	26
'21년	1,018	1,295	23	206	687	459	70	19
대비(%)	-8.3	-2.9	-21.7	-17.0	-8.4	5.4	30.0	36.8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현황(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 교육)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자녀가 등, 하교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3. 4. 7.

남원용성중학교 **장**



※ 이 가정통신문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nwys.ms.kr> 학교소식/가정통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1****관련 법령** **자전거**

법령	내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헬멧) 착용

※ 전기자전거 중 페달보조방식(PAS)은 자전거 운행 요건을 따름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	내용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헬멧) 착용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사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전기자전거 중 스로틀방식(Throttle)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요건을 따름

꼭 약속하자!

## 전기자전거운·행·요·건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해요!



- 페달보조방식**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 스로틀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은 해당되지 않음
- 25km/h 미만**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가 작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 30kg 미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전요건(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www.bike.go.kr



##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Tip**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이쁜 점이 좋아요!  
교행비 절감, 탄소배출 감소,  
레저 취미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T.02-2100-3399

기본 좋은 소식!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자전거로  
교통비도 절감하고, 건강도 챙기세요!

13 안전을 위해 어린이(13세 미만)의 운행은 금지됩니다!

꼭 명심하자!

## 전기자전거운·행·수·칙

전기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운행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브레이크 점검**  
정지한 상태에서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안전장치 장착**  
이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합니다.

꼭 기억하자!

## 전기자전거운·행·법·규

전기자전거 운행 시, 관련법규를 잊지 않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부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로틀방식 금지**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함)